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와 사용자부담 4대보험료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미제출가산세(0.25%)가 적용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 중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소액의 강연료 소득이나 10만원 초과되는 복권·경품권 등 그리고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소득 중 4대 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이나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그리고 일직료나 숙직료 등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는 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12(4)의 비과세근로소득 중 지급명세서제출대상 내용

- ①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등
- ②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③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④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⑤ 외국정부,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⑥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⑦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⑧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수당
- ⑨ 10만원 이하 출산 보육수당